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8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이와 관련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폭주가 일어날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워,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는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됨.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안 제5조)

라.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 제작·배포(안 제6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안 제7조~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2.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

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마련된 화재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